

연구보고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2014. 10



목 차

I. 글로벌 준법경영 동향 / 1

1. 글로벌 준법감시 정책의 강화
2. 반독점 관련 제재
3. 반부패 관련 제재

II. 우리기업의 대응현황 / 9

1.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준법리스크 노출
2. 대응현황

III. 대응과제 / 13

1. 준법경영의 중요성 인식
2. 사내 준법경영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3. 기업내 소통문화 확산
4. 정부 규제완화를 통한 행정투명성 제고
5. 준법경영 인프라 조성

I. 글로벌 준법경영 동향

1. 글로벌 준법감시 정책의 강화

- 세계적으로 반부패·반독점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추세

- 2000년대 초반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부패방지 협약을 제정
 - * OECD, UN의 부패방지 관련 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1999년)	UN 반부패협약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범죄행위로 규정- 직원 및 법인의 형사처벌 권고- 국제상거래에서 가입국의 기업(인)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제공(약속)시 해당기업의 소속국가가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행위도 포함하는 포괄적 반부패협약- 부파행위에 대한 각국의 범죄규정, 뇌물·횡령·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 채택- 각국 정부가 반부패기구를 창설하고 선거·정당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 최근에는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반부패·반독점에 대한 법 제정 및 집행이 증가

- * 주요국가의 반부패·반독점 제재 동향

국가	주요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1989년,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 제정· 1991년, 연방판결 가이드라인 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법 위반시 준법경영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면 책임 감면· 199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권 범위확대를 통해 외국기업이 외국 관료에 뇌물제공시 처벌· 2001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윤리경영 의무화·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회계부정 금지 및 투자자 보호· 2009년, 오바마 대통령, 국제카르텔 공격적 차단 발표

영국	· 2010년, 놈물수수법 제정
EU	· 1996년, 기업윤리 추진단체 'CSR 유럽' 출범 · 2001년, 기업의 CSR책임 규정한 '그린페이퍼' 발표 · 2005년, EU 경쟁위에 카르텔전담국 신설
중국	· 2008년, 반독점법 제정(역외적용조항 명문화) · 2013년, LCD 단합 건에 최초로 역외적용 및 과징금 부과 · 2014년, 글로벌제약회사에 놈물공여죄로 벌금(5천억원) 부과

- 선진국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부패, 반독점 정책을 활용한다는 지적
 - *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보호무역은 과거 빈Dumping관세 등과 같은 직접적 조치에서 최근에는 국제카르텔, 부패방지, 자작자신권 보호 등 간접적 수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 중
- 앞으로 미국, EU, 중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가에도 반부패·반독점 제재 입법 및 집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2. 반독점 관련 제재

- 미국은 2009년 공격적 차단방침을 발표하고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고 있음
 - 2004년 벌금 및 징역형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개인에 대한 징역형을 적극 집행

* 반독점법 위반 관련 법정형 조정(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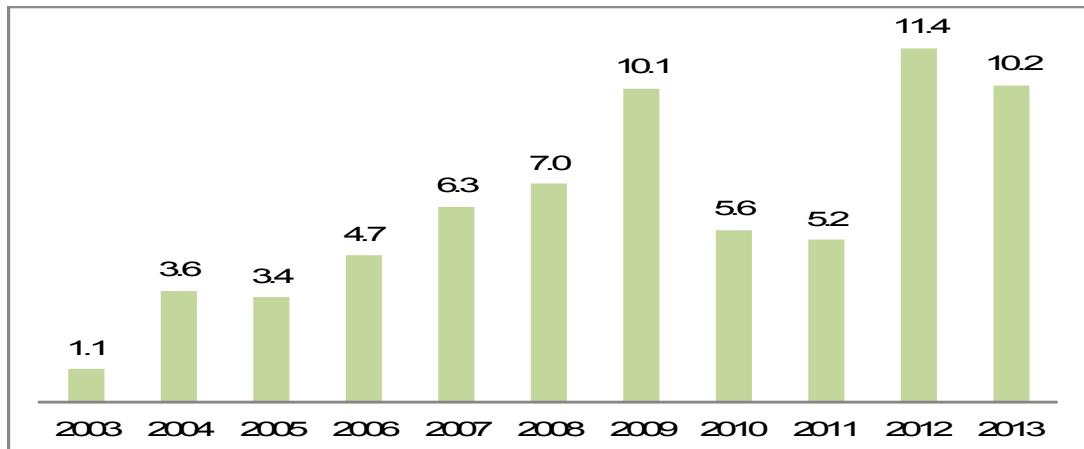
구분	벌금(달러)	징역
개인	35만 → 100만	3년 → 10년
기업	1,000만 → 1억*	—

*기업 벌금은 i) 1억달러, ii) 소비자피해액의 2배, iii) 사업자이득의 2배 중 큰 금액을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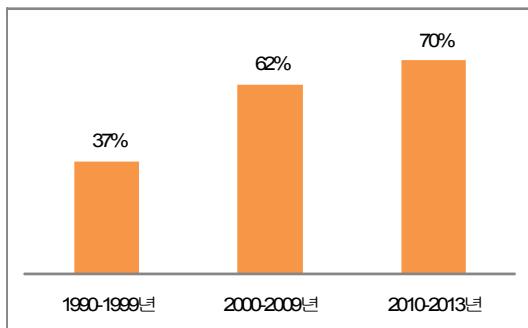
- *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형사제재 실적(미 법무부)
- 벌금 총액 : 1억 7백만 달러(2003년) → 10억 2천만 달러(2013년)
 - 징역형 선고 비율 : 37%(1990년대) → 70%(2010년대)

- 평균 구속기간 : 8개월(1990년대) → 25개월(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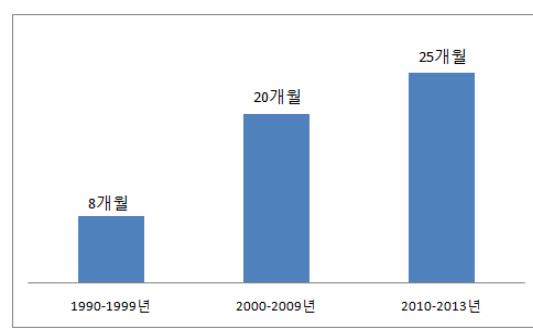
<그림1> 반독점법 위반 벌금액 추이(억달러)



<그림2> 정역 선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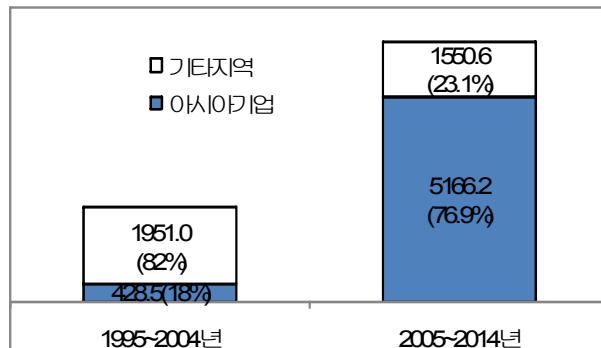
<그림3> 평균 구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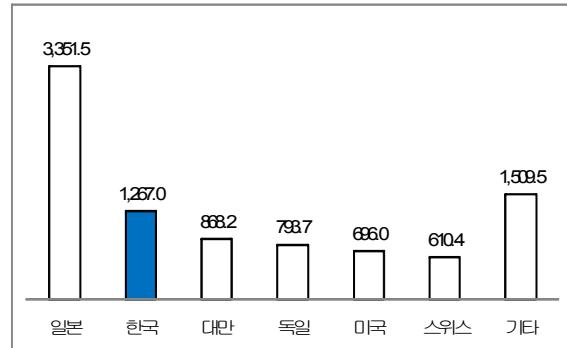
* 자료 : 미국 법무부

- 외국기업에 대한 법 적용이 증가하면서 특히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기업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음
 - 1995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법 위반으로 1,00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 중 101건이 외국기업이며 한국기업은 6개사이나 총 벌금액의 13.9% 차지
 - 아시아기업에 부과된 벌금총액은 55.9억 달러로 전체 90.9억 달러의 61.5% 차지
 - * 반독점법 강화 이전인 1995~2004년까지 아시아기업이 부과받은 벌금액은 전체의 18%에 그쳤으나, 2005~2014년까지는 전체의 76.9%

<그림4> 美반독점법 위반 벌금부과 추이(백만달러)



<그림5> 국가별 벌금 부과 총액(백만달러)



* 자료 : 미국 법무부, ** 1천만불 이상 벌금을 부과받은 117건 대상(1995~2014.9.7 현재)

- EU 경쟁위원회는 카르텔 적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 집행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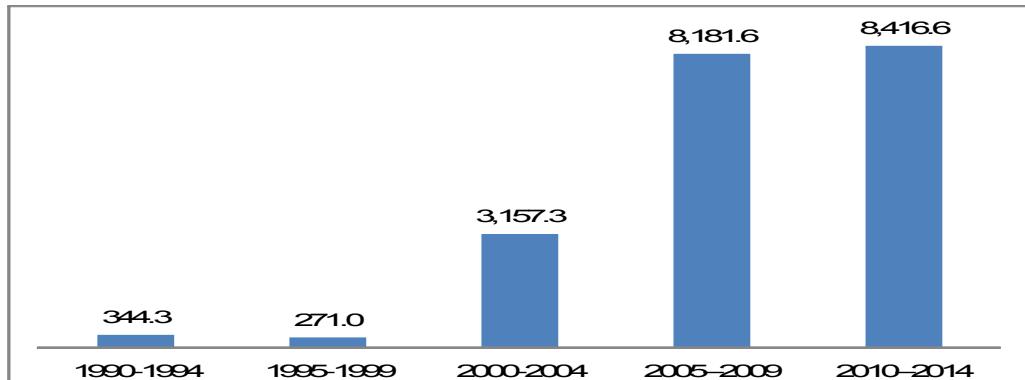
- 2006년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과징금 금액을 대폭 증액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본과징금	법위반 정도에 따른 정액	EU지역 매출액의 30% 이내
공동행위기간	1년 증기할 때마다 기본 과징금 10%씩 증액	1년 증기할 때마다 기본과징금 100%씩 증액 가능
Entry Fee	—	카르텔 참여만으로 매출액의 15~25% 과징금 부과
기증김명	—	기증시유 확대김명시유 축소, 상습위반시 100%까지 기증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4.6월, 공정위·전경련 공동설명회 발표자료)

- 과징금부과 총액이 2000~2004년 31.6억 유로에서, 2005~2009년 81.8억 유로, 2010년 이후 최근까지 84.2억 유로로 증가

< 그림6 > EU 국제카르텔 과징금 추이(백만유로)



* 자료 : EC Cartel Statistics (Fines imposed adjusted for Court judgments, 2014. 5.15 기준)

- 중국도 2008년 반독점법을 도입(역외적용조항 명문화)하여 2013년에 최초로 LCD 담합 건에 외국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조사와 처벌을 강화
- 그 밖에 싱가폴, 일본,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의 경쟁당국도 경쟁법 집행을 강화 중
 - * 싱가폴 : 일본 볼베어링 제조사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740만 달러) 부과(14.5월)
 - 일본 : 선박회사에 대해 사상최대 과징금(1억2900만 달러) 부과(14.3월)
 - 말레이시아 : 아시아 항공사들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313만 달러) 부과(13.9월)
 - 캐나다 : 일본 자동차부품 제조사에 대해 사상최대 과징금(3000만 달러) 부과(13.4월)
 - 대만 : 전력회사에 대해 사상최대 과징금(2억1300만 달러) 부과(13.3월)
- 현재까지 우리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3.3조원을 넘으며, 절반가량(1.6조원)이 2010년 이후 최근에 제재를 받은 금액
 - 국가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5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EU가 46.4%로 두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2013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기 시작

<표1> 한국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

기간별	금액	비중	국가별	금액	비중
~2000년 이전	23억원	0.1%	미국	1조7,133억원	51.4%
2000~2004년	438억원	1.3%	EU	1조5,441억원	46.4%
2005~2009년	1조 6,721억원	50.2%	중국	373억원	1.1%
2010~2013년	1조 6,125억원	48.4%	일본	201억원	0.6%
계	3조 3,307억원	100%	기타	159억원	0.5%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4.9월, 대한상의 · 화우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3. 반부패 관련 제재

- 미국은 1977년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

- 1998년 관할권 확대*를 통해 적용범위를 외국기업에도 확대

*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회사가 미국 영토 밖에서 외국 관료에게 뇌물 제공시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 메일시스템 등을 이용한 경우 미국 영토내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독일 기업 Siemens는 2000년대 초반 중국, 러시아, 이라크 등의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4,238회에 걸쳐 총 14억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함. 미국 정부는 독일법인 Siemens가 미국 영토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ADR(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해 주식이 거래된다는 점을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FCPA를 적용, 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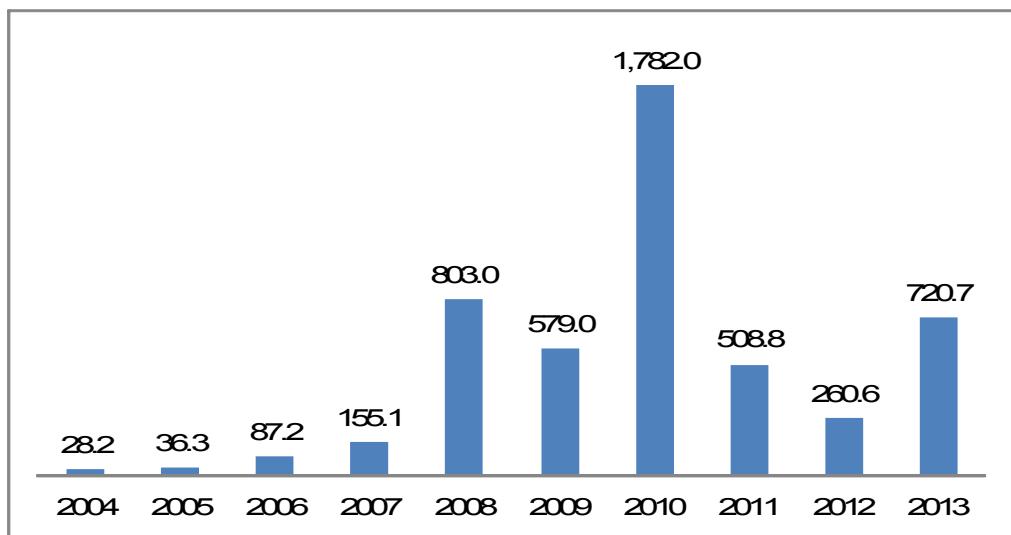
- 현재까지 벌금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 중 Siemens(독일) 등 9곳이 외국기업으로 모두 2008년 이후에 부과받음

*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벌금 상위 10개 기업

순위	회사명(국적)	벌금액	연도
1	Siemens(독일)	8억 달러	2008
2	KBR / Halliburton(미국)	5억7,900만 달러	2009
3	BAE(영국)	4억 달러	2010
4	Total S.A.(프랑스)	3억9,800만 달러	2013
5	Snamprogetti Netherlands B.V. / ENI S.p.A(네덜란드/이탈리아)	3억6,500만 달러	2010
6	Technip S.A.(프랑스)	3억3,800만 달러	2010
7	JGC Corporation(일본)	2억1,880만 달러	2011
8	Daimler AG(독일)	1억8,500만 달러	2010
9	Alcatel-Lucent(프랑스)	1억3,700만 달러	2010
10	Magyar Telekom / Deutsche Telekom(헝가리/독일)	9,500만 달러	2011

* 자료 : www.fcpablog.com

< 그림7 > FCPA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총액(백만달러)



* 자료 : FCPA Digest(January 2014) by shearman & sterling LLP

- 아직 한국기업에 직접 적용된 사례는 없음. 그러나 벌금액이 수 천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각별한 주의 요구
- 특히 미국 법무부는 FCPA 위반에 대한 승계자 책임(Successor Liability)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해외기업 M&A시 철저하고 충분한 實查가 필요
 - * 미국 법무부 등이 발간한 FCPA 안내서는 합병 등에 의해 포괄적으로 부채와 책임이 인수되는 경우는 물론 주식인수나 자산 양수 등 의 경우라도 i) 피인수기업의 FCPA 위반이 매우 중대하고 지속적 인 경우 또는 ii) 승계자가 인수 이후 위반행위에 동참하거나 막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자에게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
- 영국은 2010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보다 강력한 '뇌물법(Bribery Act)'을 제정하여 뇌물공여자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자 까지 처벌
-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제한적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 역형에 정부조달 참여금지, 이사회 자격박탈, 자산 몰수 등 강 력한 제재를 부과

*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뇌물법(Bribery Act) 비교

구분	해외부패방지법(FCPA)	뇌물수수법(Bribery Act)
제정연도	1977년	2010년
규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증시 상장기업 또는 SEC 공시기업(ADR을 美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 포함) - 미국을 주된 사업지로 하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 기타 · 회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발행자 	영국기업 및 영국에서 일부라도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제공 · 장부외 계정, 부정확한 기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제공 * 회계관련 범죄는 제외
수뢰자	외국 공무원	외국 공무원 + 사기업 업무담당자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관련(제공자만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2백만 달러 이하 벌금 - (개인) 10만 달러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행료는 뇌물의 예외 · 회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25백만달러 이하 벌금 - (개인)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및 20년 이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물관련(제공자+수수자도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벌금(상한 없음) - (개인) 벌금(상한 없음) 및 10년 이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행료도 뇌물로 간주

○ 그 밖에 브라질, 캐나다 등도 반부패법을 신설 또는 강화 중

* 브라질 :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공무원 대상 뇌물제공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확대(13.8월)

캐나다 : 해외관리부패법(CFPOA) 관할권 확대, 처벌수위 상향 등(13.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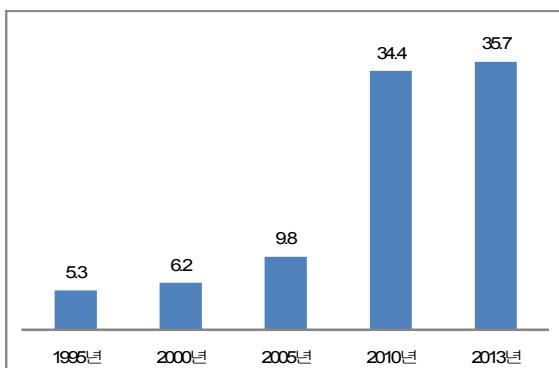
세계은행 : 방글라데시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캐나다 엔지니어링 기업 SNC 및 계열사 100곳에 대해 10년간 세계은행이 출자하는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금지(13.4월)

II. 우리기업의 대응현황

1.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준법리스크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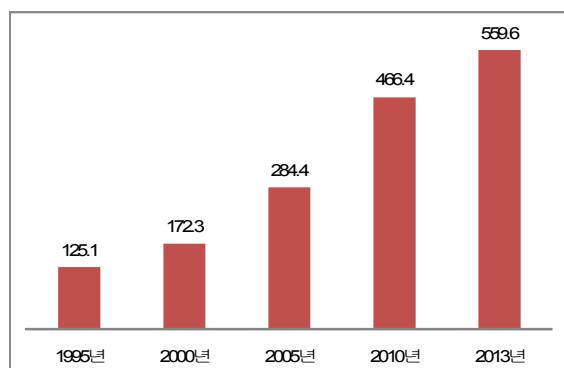
- 2005년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수출시장의 외국기업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
 - 높은 수출 비중으로 인해 해외 준법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의 타격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

< 그림8 > 해외직접투자 추이(십억불, 신고기준)



* 자료 : 수출입은행

< 그림9 > 수출액 추이(십억불)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 수출의존도(십억불, 2013년 기준)

국가	한국	독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수출액	560	1,366	527	2,211	568	496	715	1,580
GDP	1,198	3,593	2,118	8,939	2,739	2,490	5,007	16,724
수출비중	46.7%	38.0%	24.9%	24.7%	20.7%	19.9%	14.3%	9.4%

* 자료 : 한국무역협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특히 경제 규모는 크지만 서구권 국가에 비해 준법경영에 약점이 있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

* 아시아 직원들은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정직하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지만, 미국·유럽에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NBES survey 2013)

- 한편, 뇌물을 요구하는 해외에서의 현지 관행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정행위를 유인할 가능성도 높음

*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2013년) : 독일(12위), 미국(19위), 한국(46위), 중국(80위)

- 반독점법, 반부패법 위반은 막대한 벌금, 징역형 및 거액의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추락, 매출 감소 등 심각한 손실을 야기

2. 대응현황

-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기업이 2000년대 초반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프로그램을 도입
 - 포스코, 교보생명, 신세계 등을 선두로 윤리헌장을 제정·선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 추진
 - 현재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업종 등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준법경영(윤리경영) 도입·운영 중

* 국내 주요기업(40社) 윤리경영 현황 조사결과(2013.8월,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비전과 전략 제시	명문화된 비전과 전략 제시		명문화된 비전 제시	명문화된 전략 제시	
	6개 기업		33개 기업	1개 기업	
윤리강령 제정	윤리강령 제정		정기적 개정 및 수정	비정기적 개정 및 수정	
	40개 기업		14개 기업	23개 기업	
윤리경영 전담조직 운영	전담조직 구축		전담인력 있음	겸직인력 있음	
	36개 기업		2개 기업	2개 기업	
윤리경영 교육 수행	전직원 대상	윤리업무 담당자 대상	임원 대상	부서장 대상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38개 기업	21개 기업	23개 기업	19개 기업	23개 기업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임직원 대상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해당사항 없음
	39개 기업		38개 기업	35개 기업	1개 기업

윤리경영 성과평가	기업 윤리경영 성과평가	임직원 윤리경영 성과평가	이해관계자 윤리경영 성과평가	해당사항 없음		
	32개 기업	25개 기업	23개 기업	4개 기업		
윤리경영 성과보고	매년발간		격년발간	해당사항 없음		
	28개 기업		8개 기업	4개 기업		
윤리경영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	구성원 무관심	관련 정보 부족	정부지원 부족	경영진 의지 부족	법과 제도 미비	기업의 제도적 장치 미비
	13개 기업	11개 기업	10개 기업	5개 기업	2개 기업	2개 기업
정부에게 바라는 점	윤리경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윤리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		부패척결에 대한 명확한 의지	윤리경영에 대한 정책 강화	
	26개 기업	17개 기업		10개 기업	4개 기업	

- 해외부패방지법 강화에 대응하여 포스코는 국내기업 중 유일하게 FCPA 관련 전사 프로그램을 운영
 - 2010년 국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전 및 접대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
 - 2011년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신고·상담센터' 개설
 - 가이드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전 임직원으로부터 준수서약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기업 중에는 준법윤리경영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전사적 경영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곳이 적지 않음
 - * 최근 한국SR전략연구소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가 사내에 CSR 전담조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현재 활동에 대해서는 80%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 단순히 윤리현장을 추상적으로 보유하고 교육·캠페인 등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준법리스크 예방에 큰 효과가 없음
 - 미국의 경우 준법경영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옹 펠요

- 또한 해외 시장에서 직면하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준법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III. 대응과제

1. 준법경영의 중요성 인식

- 기업은 준법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필요
 - 준법경영시스템 구축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사후적으로는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 준법경영을 정부 규제 때문에 부득이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의 안정적 사업을 위한 생산적 투자라는 인식 함양
- 해외진출 기업은 준법경영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에 주력
 - 미국은 기업범죄 적발시 연방판결지침(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 for Corporations)에 따라 효과적인 준법경영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형량을 90%까지 감형해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400%까지 가중형을 부과함
 - * 미국 연방법원의 기업양형지침
 - 1) 종업원 행동강령이 있고 2) 준법담당 임원을 두고 3)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4) 평소에 기업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5)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준법감사를 실시하고 6) 비윤리적 행위는 철저히 처벌하고 7)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범죄라도 형량을 가볍게 할 수 있음
 - * 대부분 미국기업들은 연방판결지침에 맞게 준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외국계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해 가중형을 받고 있음
 - 아울러 외국기업을 M&A하려는 기업은 피인수기업의 FCPA 위반 등 준법경영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승계책임(Successor Liability)을 지지 않도록 유의

2. 사내 준법경영프로그램의 정비 및 운영

- 많은 기업들이 10여년 전 준법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세계 동향이나 현실에 맞게 개선하지 않은 채 Paper Compliance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이 실시한 2013년 아시아·태평양 부정부패 보고서”에서 한국기업 응답자의 86%는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원칙은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

- 미국 엔론社의 경우 65쪽에 달하는 윤리강령과 준법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회계부정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 준법경영이 기업경영 전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동기부여, 성과 평가 및 인사고과 반영 등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윤리강령의 정기 업데이트 및 행동지침의 구체화

- 해외 동향,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강령의 정기·수시 개정
- 사업 일선에서 부딪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마련

*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공공사업 입찰, 하청업체 계약 등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개발

- 지속적·반복적인 교육을 통한 준법 의식 고양
- 형식적·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업무관련성, 상호작용성을 높인 맞춤형 교육 실시

*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부서장의 소속직원 직접교육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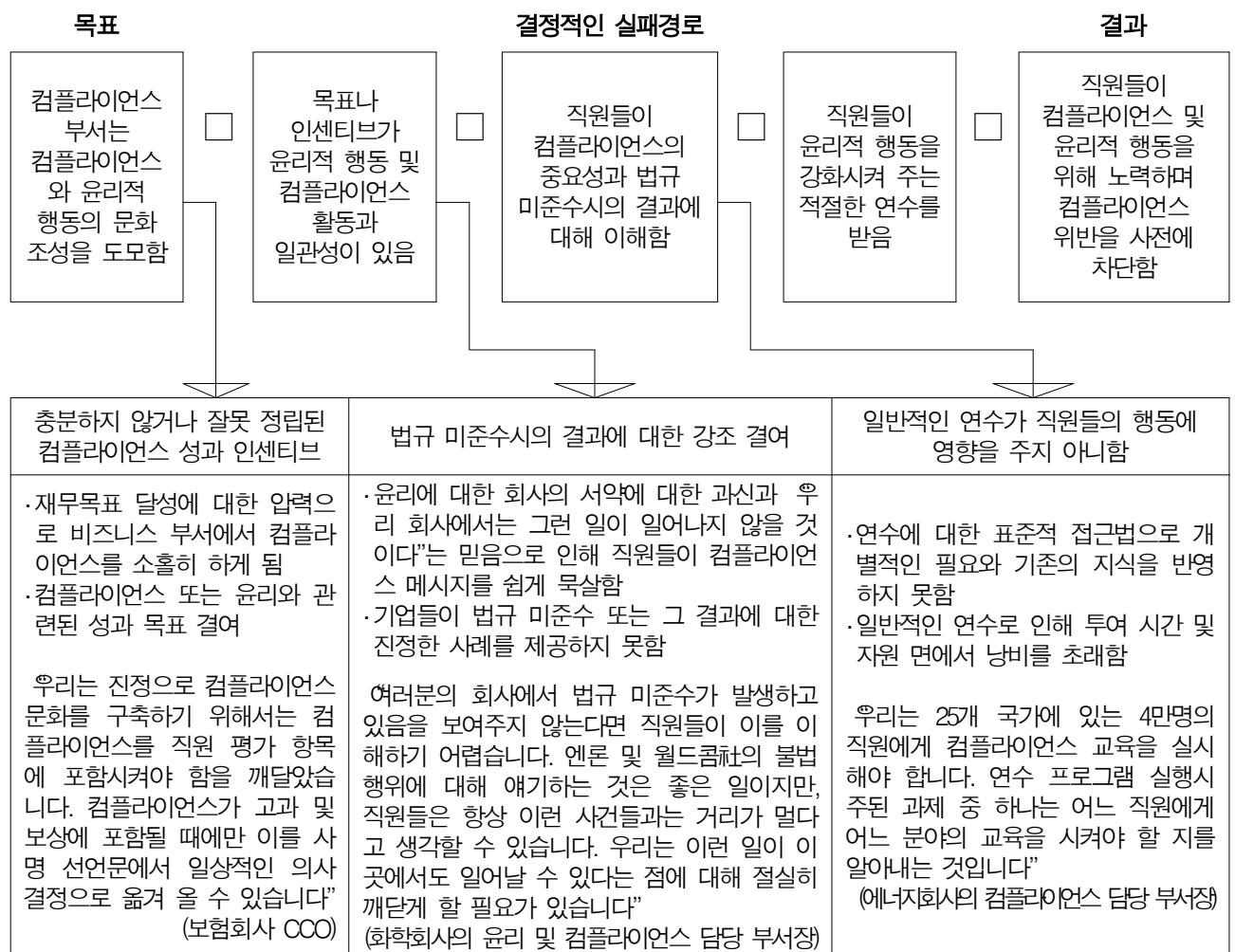
○ 준법경영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마련 및 인사고과 반영

-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 인사고과, 인센티브 등에 반영토록 함

○ 감사, 징계 보다 예방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역점

- 소극적 태도와 회피하는 자세에서 적극적 업무수행 유도
- 임직원 소속감 및 자부심 고취

< 그림10 > 기업에서의 컴플라이언스 내면화에 대한 주요 장애물



* 자료 : 마틴 비켈만 著 「Compliance Program」

3. 기업내 소통문화 확산

- 기업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국제공인부정조사자협회(ACFE)가 2012년 세계 96개국의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비윤리행위의 최초 적발경로를 조사한 결과 내부제보를 통해 적발한 비율이 43.3%로 가장 높음

* 비윤리행위 최초 적발경로(2012 Global Fraud Survey, Report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by ACFE)

내부통제수단	제보	내부감사	우연
비율	43.3%	14.4%	7.0%

- 한국기업에도 내부고발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외국과 달리 문화·정서의 차이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이 실시한 “2013년 아시아·태평양 부정부패 보고서”에서 한국기업 응답자의 72%는 “비밀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 아시아·태평양 전체 응답자의 81%가 내부제보시스템을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한 것과 대비

- 내부고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① 고발자의 비밀 보장, ② 명확한 보고체계, ③ 충분한 보상, ④ 보복조치 방지 등 필요

< 독일 Siemens 의 내부신고 제도 >

독일의 글로벌 기업 지멘스는 기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준법 헬프데스크)를 구축·운영

* 준법 헬프데스크는 5가지 파트로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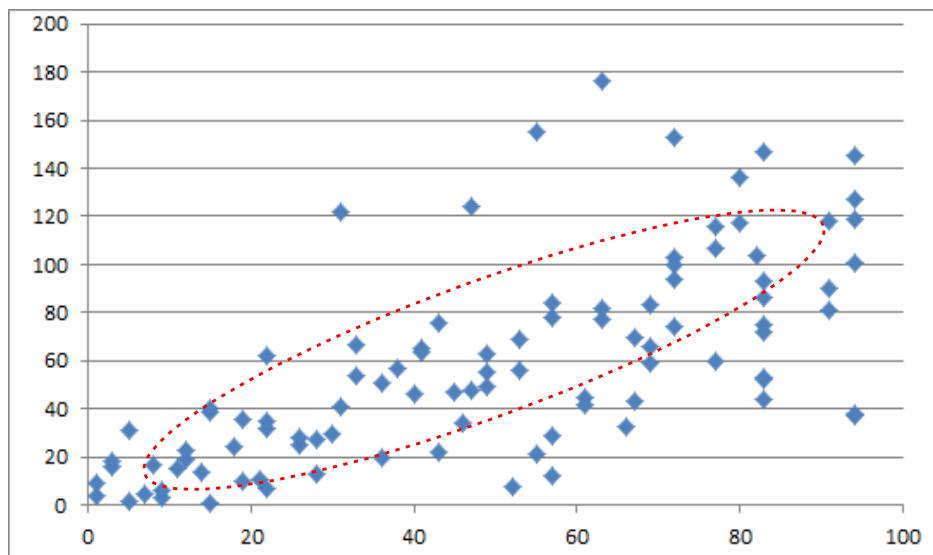
Ask Us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
Find It	컴플라이언스 정보, 정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Improve I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
Approve It	선물, 접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Tell Us	컴플라이언스 관련 위반사항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
* 2012년 “Tell us”를 통해 모두 1700여건이 신고됐고, 그중 266건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짐.	
* 또 직원들과 외부인이 익명으로 비밀리에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할 수 있게 외부 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를 독립적인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활동	

4. 정부 규제완화를 통한 행정 투명성 제고

-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와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각국 순위를 비교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수준이 낮음

< 그림8 > 국가별 경제자유도 및 부패인식지수 분포도



* 가로축(부패인식지수 순위), 세로축(경제자유도 순위)

- 경제규제가 증가하면 뇌물, 로비 등 부패가 늘어나 사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됨.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준법경영 인프라 조성

○ 중견·중소기업에 준법경영시스템 확산

- 기업이 법률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 '기업관련법령 자문단'을 설치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밀착서비스 제공
- '준법경영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준법경영 컨설팅·지원

○ 준법경영 인센티브 강화

-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 지원제도 강화
 - * 최근 CP 등급평가시 A등급 이상에 부여하던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폐지돼 기업 참여도가 감소할 것으로 우려
- 준법경영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세무조사 완화, 정부 발주공사의 입찰 심사시 가점제공 등

○ 미국 법원과 같이 기업에 대한 재판시 Compliance Program 운영 여부를 양형사유로 참고하는 방안 모색

- 미국 연방법원 판결지침 개정은 준법경영 문화 확산에 큰 효과